

**Times CAR RENTAL 대여 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 ( 2020년 4월 1일 개정 )**

조항	개정 후	개정 전
제 7 조 (대여 계약의 성립) 제 6 항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에서 지정하는 대여 개시 일시에 같은 조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실시하며,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은 대여 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예약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5 항에 의거한 렌터카 인도가 있던 시점에 해당 예약 계약이 완결되어 대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또한 렌터카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대여 개시 일시에 같은 조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실시하며,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은 대여 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제 7 조 (대여 계약의 성립) 제 7 항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 4 조 제 4 항에 따라 당사에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예약 보증금을 당사가 수령한 상태에서 해당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된 때에는 당사는 해당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당사에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예약 보증금을 당사가 수령한 상태에서 해당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된 때에는 당사는 해당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대여 계약 체결 거부) 제 2 항	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고, 임차인은 제 4 조 제 4 항에 준하여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고, 임차인은 제 4 조 제 3 항에 준하여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 17 조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대여 중도 종료) 제 2 항	임차인은 제 1 항의 해약을 할 때에는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해약 수수료】 (대여 계약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 대여에서부터 해약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x 50% 단,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한도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제 1 항의 해약을 할 때에는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해약 수수료】 (대여 계약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 대여에서부터 해약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여 요금) x 50%
제 26 조 (주차위반을 한 경우의 조치 등) 제 5 항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당사로 주차 위반 연락이 온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 대해 다음 항에서 지정하는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상당액의 예치금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예치금을 지불한 경우에, 당사가 다음 항에 지정한 방치 위반금을 납부하기 전에 임차인이 범칙금을 납부했을 경우, 당사는 예치금에서 해당 주차 위반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신설)
제 26 조 (주차위반을 한 경우의 조치 등) 제 5 항→제 6 항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 51 조의 4 제 4 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혹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찾는 데 들인 비용 혹은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들인 비용을 부담한 경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로부터 차량의 사용 제한(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당사는 임차인에게 다음에 기재한 금액(이하 "주차위반 관련 비용"이라 함) 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위반 위약금 (3) 찾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4) 당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사용 제한(운전 금지)으로 인한 영업 보상금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 51 조의 4 제 1 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혹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찾는 데 들인 비용 혹은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들인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게 다음에 기재한 금액(이하 "주차위반 관련 비용"이라 함)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5) 방치 위반금 상당액 (6)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위반 위약금 (7) 찾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제 34 조 (반납 장소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8 조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렌터카를 반납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8 조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렌터카를 반납한

제 2 항	<p>경우에는 임차인은 다음에서 정하는 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p> <p><b>【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b></p> <p>반납 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렌터카 이동 비용을 포함한 실비 상당액 및 손해액</p>	<p>경우에는 임차인은 다음에서 정하는 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p> <p><b>【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b></p> <p>반납 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렌터카 이동 비용×3</p>
제 42 조 (자동차 제조사 등에 의한 차량 정보 취득)	<p>제 42 조 (자동차 제조사 등에 의한 차량 정보 취득)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차량에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판매 회사 및 자동차 제조사 등의 제휴 사업자 (이하 "자동차 제조사 등"이라 함)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차재 기기가 탑재된 경우가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 등이 다음과 같은 차량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p> <p>(1) 주요 차량 정보 주행 시간, 주행 거리, 속도, 차량 상태, 위치 정보 등</p> <p>(2) 이용 목적 긴급 시 상황 확인, 자동차 제조사 등이 제공하는 상품 개발, 안전 관리 대처, 서비스 향상 등 자동차 제조사 등 소정의 이용 목적에 준합니다.</p> <p>(3) 본조에 기반한 차량 정보의 취득자 및 책임자 자동차 제조사 등</p> <p>(4) 보존 기간 자동차 제조사 등 소정의 보존 기간에 준합니다.</p>	(신설)
제 43 조 (본 약관등의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는 임차인의 사전 허락 없이 다음 항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본 약관 및 세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li> <li>본 약관 및 세칙의 변경은 변경 내용을 제 36 조 8 항에 기재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또는 해당 변경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것에 의해 이행됩니다.</li> <li>전항에 의거한 본 약관 및 세칙 변경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효력 발효일 또는 전항의 적절한 고지 방법으로 명시한 효력 발효일부터 발생합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는 임차인의 사전 허락없이 제 43 조 2 항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본 약관 및 세칙을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li> <li>본 약관 및 세칙의 변경은 변경내용을 제 36 조 8 항에 기재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것에 의해 이행됩니다.</li> <li>전항에 의거한 본 약관 및 세칙의 변경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효력발효일에 따라 발효됩니다.</li> </ol>

## 인터넷 신용 카드 결제 특약 (해외판) 개정 전/후 비교표 ( 2020 년 4 월 1 일 개정 )

조항	개정 후	개정 전
제 11 조 (본 특약 등의 변경)	<p>제 11 조 (본 특약 등의 변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는 예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항에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li> <li>본 특약의 변경은 변경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또는 해당 변경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예약자에게 고지하여 실시합니다.</li> <li>전항에 따른 본 특약 변경의 효력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효력 발효일 또는 전항의 적절한 고지 방법으로 명시한 효력 발효일부터 발생합니다.</li> </ol>	(신설)